복합지구 분쟁해결 절차

1. 절차의 대상이 되는 항의

회원, 복합지구 헌장 및 부칙 또는 복합지구 총재협의회에서 수시로 채택하는 방침이나 절차의 해석, 위반, 적용, 복합지구 내 클럽(들)이나 정지구(들)과 복합지구 집행부 사이에 야기되어 다른 방법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는 라이온스 복합지구 내부 문제와 관련된 모든 분쟁은 아래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여기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절차에 명시된 시간 제한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복합지구 의장이, 항의가 복합지구 의장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복합지구 사무총장이나 재무총장, 중재자 또는 국제이사회(또는 지명된 사람)가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절차를 따르는 모든 분쟁 당사자는 이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행정적 또는 사법적 조치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2. 항의 및 수수료

협회의 굿 스탠딩 라이온스 클럽이나 정지구(“항의자”)는 본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요청하는 서면요청서(“항의”)를 복합지구 의장에게, 항의가 복합지구 의장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복합지구 사무총장이나 재무총장에게 제기하며, 사본을 법률부에 제출한다. 항의는 항의의 바탕이 된 사건이 발생한 날 또는 항의자가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항의자는 클럽 또는 지구 사무총장이 서명한 회의록을 제출하여 클럽 전체 회원 또는 지구 임원회의 과반수가 항의 제기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항의서 사본을 답변자(들)에게 발송해야 한다.

이 절차에 따라 항의를 제기하려면 각 항의자가 수수료US$750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국통화를 복합지구에 납부해야 하며, 수수료는 항의를 제기하는 시점에

복합지구 의장에게, 항의가 복합지구 의장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복합지구 사무총장이나 재무총장에게 납부한다. 중재자의 최종 결정에 앞서 항의가 해결되거나 철회된 경우, 복합지구는 US$100를 관리 수수료로 수납하고, US$325는 항의자에게 반환하고, US$325는 답변자에게 지급한다(답변자가 2명 이상이면 균등하게 분배한다). 선정된 중재자가 항의에 명분이 있음을 발견하고 항의를 인정하는 경우, 복합지구는 US$100를 관리 수수료로 수납하고, US$650는 항의자에게 반환한다. 선정된 중재자가 어떠한 이유로든 항의를 기각하는 경우, 복합지구는 US$100를 관리 수수료로 수납하고, US$650는 답변자에게 지급한다(답변자가 2명 이상이면 균등하게 분배한다). 본 절차에서 수립한 기한 내에 항의가 해결, 철회, 인정, 기각되지 않는 경우(정당한 사유로 연장되지 않는 한), 전체 수수료는 자동적으로 복합지구에서 관리 수수료로 수납하며, 어떠한 당사자에게도 환불되지 않는다. 이 분쟁해결 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경비는 분쟁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복합지구 방침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이 분쟁해결 절차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복합지구가 부담해야 한다.

3. 항의에 대한 답변

응답자는 항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의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복합지구 의장에게, 항의가 복합지구 의장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복합지구 사무총장이나 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본을 법률부에 제출한다. 답변서의 사본을 항의자(들)에게 발송해야 한다.

4. 기밀유지

항의가 제기되면, 항의자, 답변자, 복합지구 의장, 항의가 복합지구 의장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복합지구 사무총장이나 재무총장, 중재자 사이의 통신은 가능한 한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5. 중재자 선정

항의 제기 후 10일 이내에 각 분쟁 당사자는 중립 중재자를 1명씩 선정해야 한다. 중재자는 전총재, 가급적이면 전의장이어야 하며, 현재 분쟁이 제기된 복합지구 내에서 분쟁 당사자가 아닌 굿 스탠딩 클럽의 굿 스탠딩 회원으로서 분쟁 사안에 공평하고 어떠한 분쟁 당사자에게도 충성하지 않아야 한다. 중립 중재자 선정 후 5일 이내에 양측의 중립 중재자들은 위원장을 맡을 중립 중재자 1명을 선정해야 한다. 위원장은 전국제이사여야 하며 현재 분쟁이 제기된 복합지구 내에서 분쟁 당사자가 아닌 굿 스탠딩 클럽의 굿 스탠딩 회원으로서 분쟁 사안에 공평하고 어떠한 분쟁 당사자에게도 충성심을 갖지 않아야 한다. 분쟁이 제기된 복합지구 내에서 중립적인 전국제이사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정된 중재자들이 1명의 중립 중재자/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전국제이사이자 타 복합지구의 굿 스탠딩 클럽 회원이어야 한다. 중재자/위원장 선정과 관련된 중재자들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선정 절차가 완료되면, 중재자들은 본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거나 결정하는데 적절하고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선정된 중재자들이 상기에 언급된 기한 내에 중재자/위원장 선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선정된 중재자들은 행정상 사유로 자동 사임한 것으로 간주되고 당사자들은 새로운 중재자들을 선정해야 하며 ("두 번째 중재자 팀"), 두 번째 중재자 팀은 상기에 설명된 선정 절차 및 자격요건에 따라 중립 중재자/위원장 1명을 선정해야 한다. 선정된 두 번째 중재자 팀이 분쟁이 발생한 복합지구 내에서 중재자/위원장 선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선정된 중재자들은 1명의 중립 중재자/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전국제이사이자 타 복합지구의 굿 스탠딩 클럽 회원이어야 한다. 선정된 두 번째 중재자 팀이 분쟁이 발생하는 복합지구 내외에서 중재자/위원장 선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분쟁이 제기된 복합지구 내에서 또는 어디가 되었든 가장 인접한 복합지구에서 가장 최근에 국제이사에서 활동한 전국제이사가 중재자/위원장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E항의 기한은 복합지구 의장이, 항의가 복합지구 의장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복합지구 사무총장이나 재무총장, 또는 중재자들이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다.

6. 조정회의 및 중재자들의 결정

중재자들이 임명되면 중재자들은 분쟁을 조정할 목적으로 당사자 간의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중재자 임명 후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중재자들의 목적은 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우호적인 해결점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 노력이 실패하면, 중재자들은 분쟁과 관련하여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는다. 중재자들은 최초의 당사자 간 회의가 개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 결정은 최종적이고 모든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중재자들의 모든 반대의견도 적절히 기록한 서면 결정문은 모든 중재자가 서명해야 하며, 서면 결정문 사본은 모든 당사자, 복합지구 의장, 항의가 복합지구 의장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복합지구 사무총장이나 재무총장, 복합지구 총재협의회, 국제협회 법률부에 제공해야 한다. 중재자들의 결정은 국제 헌장 및 부칙, 복합지구와 지구 헌장 및 부칙, 국제이사회 방침서의 모든 해당 조항들과 일치해야 하며, 국제이사회의 권한에 따라 국제이사회 또는 대리인의 단독 재량으로 추가 검토할 수 있다.

중재자들의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라이온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위로 간주되며, 회원 자격 상실 및/또는 클럽 차터가 취소될 수 있다.